

이달의

특 집

2021 개정세법 중 소득세, 법인세 관련 주요개정내용 해설

- 국세청 -

소득세법(종합소득세 분야)



주요 개정 내용

-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
- 서화·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
-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
- 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
-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-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
-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
-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

【관계법령】
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7757호) : 2020.12.29. 공포
-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1442호) : 2021.2.17. 공포

01.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

(소득세법 제2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의무자 ① (원칙) 수익자 ② (예외) 위탁자 -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<추 가> ○ (과세방식)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좌 동)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·지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, ②수익자 지정·변경권,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본의 이익 : 위탁자 · 수익의 이익 :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○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2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

(소득세법 제4조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소득의 구분 ○ 소득원천별로 구분 ○ 소득원천별 구분의 예외 - 집합투자기구인 신탁 - 집합투자업경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○ (좌 동) -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3 서화·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

(소득세법 제12조, 제2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)

가. 개정취지

- 서화·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서화·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○ 소득구분 : 기타소득 *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※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○ 과세방법 : 분리과세 * (양도가액 - 필요경비) × 원천징수세율 20% ○ 과세 대상 : 점당 양도가액 6,000만 원 이상인 회화·데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구분 명확화 ○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- 계속적·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* *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(사업소득으로 과세) ① 서화·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·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(좌 동)

생 등 미술품(생존작가 작품 제외), 골동품(제작 후 100년 초과)	(좌 동)
--	----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04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

(소득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조 신설, 제38조)

가. 개정취지

-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주주가 아닌 임원,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○ 주택의 구입·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·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○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 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제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단서 삭제</p>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주가 아닌 임원,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○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·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○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05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

(소득세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)

가. 개정취지

-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○ 법령·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○ 숙직료, 여비(자차운전시 월 20만 원) ○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,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○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○ 교원,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<삭 제> - 기타소득으로 보되,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06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

(소득세법 제21조)

가. 개정취지

-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기타소득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금, 복권당첨금, 사행행위 참가 이익, 경미환급금, 슬롯머신등 당첨금 등 ○ 저작권, 광업권 등 자산·물품·장소 등의 양도·대여·사용의 대가 ○ 원고료, 재산권 알선 수수료, 사례금, 인적용역소득, 위약금, 보상금,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□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07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

(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, 제87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신 설></p>	<p>□총수입금액 : 양도(매매, 교환)·대여의 대가</p> <p>□필요경비 : 실제 취득가액 등*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부대비용(취급업소 수수료,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,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) 포함</p> <p>○ 취득가액 평가방법 : 선입선출법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-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함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08 과세방법 및 세율

(소득세법 제14조, 제55조의2, 제92조, 제127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과세(원천징수)</p> <p>① 연금 외 수령 소득 : 15%</p> <p>②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: 20%</p> <p>③ 복권당첨금, 경마환급금 등,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: 20% (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은 30%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과세(신고)</p> <p>④ 뇌물, 알선수재·배임수재 금품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*</p> <p>* ⑤~⑦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</p> <p>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·배상금 : 원천징수 미대상</p> <p>⑥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: 15%</p> <p>⑦ ①~⑥외의 기타소득* : 20%</p> <p>* 상금, 저작권·영화필름 등 자산·물품 등 양도·대여·사용 대가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분리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율 : 20% ○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09 과세최저한 설정

(소득세법 제84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설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마투표권 등 :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(수입금액) 10만원 이하 ○ 슬롯머신 등 당첨금(수입금액) : 건별 200만원 이하 ○ 기타 :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 <추 가> 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최저한 설정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10 과세자료 제출의무

(소득세법 제164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215조의4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가상자산사업자 ○ (제출자료)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

- ※ 제출의무 정보
- 회원정보 : 성명, 주민번호, 현금 입·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
 -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, 과세표준, 거래일자 등
 - 취급업소 간 /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 :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, 이전 시점의 시가,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
- (제출주기) : 분기별 / 연도별 제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11 신고납부방법

(소득세법 제72조, 제76조)

가. 개정취지

- 신고납부 절차, 적용시기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○ 신고기간 : 5.1일 ~ 5.31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12 2021.12.31일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

(소득세법 제37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)

가. 개정취지

-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 방법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 조정 허용 : Max(시행일 시가,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2021.12.31일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❶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: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022.1.1.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❷ ❶외의 가상자산 :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022.1.1.일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양도·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13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, 제39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단체의 명칭 ○ 법인세법 - 법정기부금단체 - 지정기부금단체 ○ 소득세법 - 기부금대상 민간단체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단체의 명칭] - 공익법인 - 공익단체

14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

(소득세법 제52조 제4항, 제5항,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* 적용 대상 *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,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, ③월세세액공제 ○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(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) 세대주 *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○ (좌 동) ○ 무주택(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) 외국인근로자*도 포함 * i)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「재외동포법」에 따라 등록된 외국국적동포로서, ii)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·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

(소득세법 제52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2호 제10항)

가. 개정취지

- 서민·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○ (대상)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

<p>특이 있는 세대주 *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제대상) ①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②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○ (공제한도) 300~1,800만 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colspan="3">상환기간 15년 이상</td> <td>상환기간 1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고정금리& 비거치식</td> <td>고정금리 or 비거치식</td> <td>기타</td> <td>고정금리 or비거치식</td> </tr> <tr> <td>1,800만원</td> <td>1,500만원</td> <td>500만원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/table>	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	고정금리& 비거치식	고정금리 or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or비거치식	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
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										
고정금리& 비거치식	고정금리 or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or비거치식										
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						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②분양권 취득) 2021.1.1.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- (③차입금 연장) 2021.2.17.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

16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
(소득세법 제55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소득세 과세표준·세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(%)</th> </tr> <tr> <td>1,200만 원 이하</td> <td>6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 원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 원</td> <td>24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 5천만 원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1.5 ~ 3억 원</td> <td>38</td> </tr> <tr> <td>3 ~ 5억 원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5억 원 초과</td> <td>42</td> </tr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(%)	1,200만 원 이하	6	1,200 ~ 4,600만 원	15	4,600 ~ 8,800만 원	24	8,800 ~ 1억 5천만 원	35	1.5 ~ 3억 원	38	3 ~ 5억 원	40	5억 원 초과	42	<p>□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(%)</th> </tr> <tr> <td>1,200만 원 이하</td> <td>6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 원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 원</td> <td>24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 5천만 원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1.5 ~ 3억 원</td> <td>38</td> </tr> <tr> <td>3 ~ 5억 원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5 ~ 10억 원</td> <td>42</td> </tr> <tr> <td>10억 원 초과</td> <td>45</td> </tr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(%)	1,200만 원 이하	6	1,200 ~ 4,600만 원	15	4,600 ~ 8,800만 원	24	8,800 ~ 1억 5천만 원	35	1.5 ~ 3억 원	38	3 ~ 5억 원	40	5 ~ 10억 원	42	10억 원 초과	45
과세표준	세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이하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 원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 원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 5천만 원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5 ~ 3억 원	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~ 5억 원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 원 초과	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이하	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 원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 원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 5천만 원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5 ~ 3억 원	3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 ~ 5억 원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 ~ 10억 원	4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억 원 초과	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1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

(소득세법 제6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의2)

가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(종합과세 선택 가능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세액 계산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$\text{세액} = [\{\text{주택임대소득} \times (1 - 50\%)\} - 200\text{만원*}] \times 14\%$ <p>*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</p> </div>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$\text{세액} = [\{\text{주택임대소득} \times (1 - 60\%)\} - 400\text{만원*}] \times 14\%$ <p>*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</p> </div>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소득 특례(조특법 §96)를 받는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$\text{세액} = \text{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조특법 §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}$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무임대기간(사후관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의 경우 : 4년 ③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: 4년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: 8년 ○ 추정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우대(② 또는 감면(③)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무임대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의 경우 : 10년 ③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: 10년 ○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민간임대주택법」상 자진·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-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

나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의무임대기간)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
(추징예외규정)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자진·자동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

1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
(소득세법 제81조의11)

가. 개정취지

-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○ (대상)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○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5% *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%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율 50% 인하 ○ (좌 등) ○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25% *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고·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19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(소득세법 제16조 제1항, 제17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소득의 종류 ○ 이자소득 - 채권·예금 등의 이자·할인액 등 <추 가>	- (좌 등) -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당소득 -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, 의제배당 등 -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	- (좌 동) <삭 제>
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20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

(소득세법 제17조 제1항·제3항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·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소득의 유형 ○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·분배금 등 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·분배금
<input type="checkbox"/> 배당소득가산(Gross-up) 적용 제외되는 배당 ○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,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<추 가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·분배금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이후 발생하는 수익부터 적용

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

(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화에 따른 세율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○ (비영업대금이익) 25% - 다만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 소득은 2020.12.31일까지 14% ○ (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) 6 ~ 42% ○ (기타 이자소득) 14%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특례 영구화 ○ (비영업대금이익) 25% - 다만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 소득은 14%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)

가. 개정취지

-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○ 비과세 기준 - (월정액 급여) 210만 원 이하 - (총급여액) 직전 과세기간 3,000만 원 이하 ○ (비과세 한도) 연간 240만 원 ○ 적용대상 1) 공장·광산 근로자, 어업, 운전, 청소, 경비 관련 종사자 2)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- (직종)미용·숙박·조리·음식·매장 판매 등 - (사업자 요건)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 대상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1) (좌 동) 2)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- (직종) 상품 대여 종사자,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, 기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 추가 <삭 제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

2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신설, 제12조, 제18조, 제38조)

가. 개정취지

-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○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, 위로금, 학자금 등 ○ 근로수당, 가족수당, 직무수당, 급식수당, 주택수당 등 ○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 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국가·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(모범공무원 수당 포함)
<input type="checkbox"/>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·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소득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모범공무원 규정」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○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·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div> ○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「공무원제안 규정」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○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(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

24 기부금대상 췌민간단체(공익단체) 지정요건 정비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)

가. 개정취지

-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</p> <p>①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<신 설></p> <p>② 수입 중 개인의 회비·후원금 비율이 50%를 초과할 것</p> <p>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자체 등에 귀속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</p> <p>④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</p> <p>⑤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 관리</p> <p>⑥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</p> <p>⑦ 기부금 모금·활용실적을 매년 3.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기간 : 지정일 이후 5년간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요건 정비</p> <p>①(좌 동)</p> <p>- 특정계층 혜택 제공이더라도 상증령 § 38에 따른 예외*에 해당시 요건 충족 간주</p> <p>* 주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○ ②~ ⑤(좌 동)</p> <p><⑥삭 제></p> <p>* 사후관리로 일원화</p> <p>⑦3.31일 → 4.30일</p> <p>* 재지정의 경우에는 실제 공개여부 확인</p> <p>- 결산서류 등을 공시*한 경우 이행 간주</p> <p>* 상증령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기간 : 지정일 이후 3년간(재지정시 6년간)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지정요건**①** : 2021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
- 지정요건**⑦** : 2021.1.1.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
- 지정기간 : 2022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

25 기부금대상 민간업체(공익단체) 취소요건 정비

(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)

가. 개정취지

- 「법인세법」 상 공익법인과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·투명성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① 상증법 제48조*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·증여세(가산세 포함)를 추징당한 경우 *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, 운용소득 70% 이상 공익목적 사용, 출연자 등 이사 1/5 초과 금지 등 14개 ②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③ 「국세기본법」에 따른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④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⑤ 단체가 해산한 경우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소요건 정비 ① 추징사유 추가 * 현행 14개 사유 외 회계감사 의무(상증법 § 50③),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(§ 50의2),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(§ 50의3) 추가 (좌 동) ⑥ 대표자 등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

2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 편의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○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 또는 기타소득 ○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] ○ (좌 동) +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

27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○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인 사업자 ○ (좌 동) ○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기준 -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 금액은 제외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 명확화 ○ (좌 동) - (좌 동) - 결정·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

28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)

가. 개정취지

-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하는 요건</p> <p>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: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</p> <p>② 정부의 허가·인가·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 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: 추가로 신고한 경우</p> <p>③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: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</p> <p>④ 법원의 판결·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</p>	<p>□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</p> <p>① 신고납부 → 신고</p> <p>② (좌 동)</p> <p>③ 추가신고납부 → 추가신고</p> <p>④ 신고납부 → 신고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별표2)

가. 개정취지

-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,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변경(7세 미만 제외, '18년 법 개정 사항) 반영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개 정	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세액표* *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○ 세율	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○ 최고세율 인상 반영	
월급여	간이세액표	월급여	간이세액표
1,000만원 이하	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천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35%)	1,000만원 이하	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천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35%)
1,000만원 초과 1,4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,372,000원) + (1,400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38%)	1,400만원 초과 2,8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,372,000원) + (1,400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38%)
1,400만원 초과 2,8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6,585,600원) + (2,800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40%)	2,8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6,585,600원) + (2,800만원 초과 금액 × 98% × 40%)
2,8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7,385,600원) + (3,000만원 초과 금액 × 40%)	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7,385,600원) + (3,000만원 초과 금액 × 40%)
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3,385,600원) + (4,500만원 초과 금액 × 42%)	4,500만원 초과 8,700만원 이하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13,385,600원) + (4,500만원 초과 금액 × 42%)
4,500만원 초과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31,009,600원) + (8,700만원 초과 금액 × 45%)	8,700만원 초과	(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) + (31,009,600원) + (8,700만원 초과 금액 × 45%)
○ 자녀세액공제 기준 - 20세 이하 자녀 수		○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-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

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, (별표 3의3))

가. 개정취지

-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금영수증 의무발급* 대상 *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</p> <p>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 등 ③ 일반고습학원,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, 전기용품·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, 음식점업 등 기타 업종 * 전체 87개 업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발급 대상 확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○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자동차 세차업, 벽지·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공구소매업,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중고가구 소매업,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모터사이클 수리업(8개 업종)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3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의2)

가. 개정취지

- 세원 투명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○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3억 원 → 2억 원 이상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7.1.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※ 20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

32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

(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)

가. 개정취지

-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다음의 경우 '21.1.1.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○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

소득세법(양도소득세 분야)



주요 개정 내용

-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
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
-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
-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
-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
-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
-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
-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

【관계법령】
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7477호) : 2020.8.18. 공포
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7757호) : 2020.12.29. 공포
-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1083호) : 2020.10.7. 공포
-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1442호) : 2021.2.17. 공포

0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

(소득세법 제88조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○ (원칙)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,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○ (예외)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*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* 신탁계약 해지권·수익자변경권·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,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0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

(소득세법 제94조, 제104조 등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1)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) 「자본시장법」(§ 110, § 189) 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○ (세율) 과표 3억 원 이하 : 20% 3억 원 초과 : 25% ○ (기준시가) 「상증법」 상 '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'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 (상증법 §65) ○ (세원관리) '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' 제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수익권(수익증권)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(수익증권) ○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(수익증권)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○ 신탁 수익권(수익증권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○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0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

(소득세법 제11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·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*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~ 31일까지(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신고기간까지)
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* 작성내용 *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○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○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○ 수익자별 수익권(증권)의 보유현황 및 내용 ○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0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

(소득세법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)

가. 개정취지

-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양권의 정의 신설 * (기존)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(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) → (개정)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

□분양권의 범위(근거 법률) 명확화

- 1.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」
- 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
- 3. 「도시개발법」
- 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- 4의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- 5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
- 6. 「주택법」
- 7. 「택지개발촉진법」

*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

0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

(소득세법 제89조, 제104조)

가. 개정취지

-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세율</p> <p>① (세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세대 2주택 : 기본세율 + 10%p - 1세대 3주택 이상 : 기본세율 + 20%p <p>② (주택 수 산정방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<p>□ 주택 수 산정방법 :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세대 1주택 +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	<p>□ 종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</p> <p>① 종과세율 인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세대 2주택 : 기본세율 + 20%p - 1세대 3주택 이상 : 기본세율 + 30%p <p>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양권 포함 <p>□ 분양권도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주택 +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

비과세 미적용 -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·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	미적용 - (좌 등) ※ 1주택·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 은 시행령에 규정
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세율 인상) 2021.6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 (주택수에 분양권 포함) 2021.1.1.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

0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신설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주택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(①②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) 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-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(㉠+㉡) 모두 충족하는 경우 ㉠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㉡ 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* 모두 충족하는 경우 * ㉠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, 1년 이상 거주할 것 ㉡ 주택이 완성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, 대체주택 양도	<input type="checkbox"/>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○ ①②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* ③은 입주권만 해당

② 상속·혼인·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

종 전	개 정
<p>□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</p> <p>① 일반주택+ 상속(입주권)</p> <p>② 「일반주택+입주권」 + 상속(주택 또는 입주권) →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</p> <p>*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「1주택+1입주권」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</p> <p>□ 혼인·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</p> <p>○ (대상)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</p> <p>- ㉠ 1주택, ㉡ 1입주권, ㉢ 1주택 1입주권 →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*</p> <p>* ㉢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·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</p> <p>□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「일반주택+입주권」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* 양도시 비과세 특례</p> <p>* 일시적 「1주택 + 1입주권」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</p>	<p>□ 상속·혼인·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

0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 관련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, 제167조의11)

가. 개정취지

- 주택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-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·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○ 취학·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·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○ 혼인 합가,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○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○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○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(정비구역 제외) 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우도 동일하게 적용 (좌 동)

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(입주권·분양권 포함)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·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중과세율 적용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-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-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○ (주택수 차감하여 계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혼인으로 주택·입주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혼인일 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·입주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	<input type="checkbox"/>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- 혼인으로 주택·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

0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, 제167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</p> <p>❶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임대주택(5년이상 임대 등) * 2018.3.31까지 등록분 -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(8년 이상 임대 등) *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'2018.9.13.까지 취득분 - 건설임대주택 등 <p>❷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임대주택(5년이상 임대 등) -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(8년 이상 임대 등) *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'2018.9.13.까지 취득분 - 건설임대주택 등 <p>②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: 8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매입임대)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- (건설임대)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	<p>①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임대주택 삭제,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</div> <p>② 10년으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-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① 2020.7.11.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(변경 신고)하는 분부터 적용
- ②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)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

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)

가. 개정취지

-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비과세 요건) 	<p>□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

<p>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 1채</p> <p>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,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기임대주택 :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% 상한 준수 등 -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'18.9.13까지 취득분:8년 이상 임대 및 임대료 5% 상한 준수 등 <p>○ (사후 관리)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등록 자진*말소 및 자동말소시 : 임대등록 말소** 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무임대기간의 1/2이상 임대한 경우 **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<p>○ 임대주택 자진*·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무임대기간의 1/2이상 임대한 경우
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비과세 요건)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)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- (추징예외)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) 이후 자진·자동 등록말소하는분부터 적용

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기임대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18.3.31까지 등록분 - (요건)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% 상한 준수 등 ○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'18.9.13까지 취득분 - (요건)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% 상한 준수 등 	<p>□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(민간임대주택법 § 6 ⑤) :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등록 자진*말소시(민간임대주택법 § 6①11) :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무임대기간의 1/2이상 임대한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)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)

가. 개정취지

-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○ (대상) 1세대 1주택 - 비조정지역 : 보유 2년 이상 - 조정지역 : 보유 2년 이상,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○ (대상) 1세대 1주택 - 보유 : 3년 이상 - 거주 :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○ (공제율) 24 ~ 80% - 보유기간 연 4% + 거주기간 연 4% * 2021.1.1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○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-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주택 거주자 ③ 최연장자 ※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순서와 동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)

가. 개정취지

-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○ (대상)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○ (요건) 2년 이상 보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○ (보유기간 계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원칙) 취득일 ~ 양도일 - (예외) 2주택 이상(일시적 2주택 제외)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('21.1.1 시행) ○ (거주기간 계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~ 전출일 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font-size: 2em; margin-right: 10px;">}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div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증여, 용도변경*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○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

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사유 추가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)

가. 개정취지

- 재개발·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판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㉡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○ (좌 동)

<p>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년 기한의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, - 법원에 경매 신청 -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공매 진행 중 - 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 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외 사유 추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
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5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)

가. 개정취지

-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(평생 1회) ○ (적용제외)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'18.9.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② '20.7.11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③ '20.7.11 이후 단기 →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삭 제> * ②,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※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6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4항, 제167조의3 제7항·제8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 편의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등록임대주택·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○ (납세자 제출) 신청서와 함께 제출 -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-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-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○ (행정정보공동이용) 공무원이 확인 - 주민등록표 등·초본 -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 ○ (좌 동) - <삭 제> [] (좌 동) -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17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

(소득세법 제95조)

가. 개정취지

-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○ (대상) 1세대 1주택자 ○ (공제액) 양도차익 × 보유기간별 공제율	<input type="checkbox"/>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○ (좌 동) ○ (공제액) 양도차익 × (보유기간별 공제율 + 거주기간별 공제율)

보유기간	공제율(%)	보유기간	공제율(%)	거주기간	공제율(%)
3년 이상 4년 미만	24	3년 이상 4년 미만	12	2년 이상 3년 미만(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)	8
4 ~ 5년	32			3 ~ 4년	12
5 ~ 6년	40	4 ~ 5년	16	4 ~ 5년	16
6 ~ 7년	48	5 ~ 6년	20	5 ~ 6년	20
7 ~ 8년	56	6 ~ 7년	24	6 ~ 7년	24
8 ~ 9년	64	7 ~ 8년	28	7 ~ 8년	28
9 ~ 10년	72	8 ~ 9년	32	8 ~ 9년	32
10년 이상	80	9 ~ 10년	36	9 ~ 10년	36
		10년 이상	40	10년 이상	40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18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

(소득세법 제104조)

가. 개정취지

-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○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- 1년 미만 : 40% - 1년~2년 미만 : 기본세율 ○ 그 외 부동산 - 1년 미만 : 50% - 1년 ~ 2년 미만 : 40%	<input type="checkbox"/>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○ (좌 동) - 1년 미만 : 70% - 1년~2년 미만 : 60% □ (좌 동)
<input type="checkbox"/>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○ 보유기간 불문 50%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(지역 불문)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○ 1년 미만 : 70% ○ 1년 이상 : 60%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6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19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종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, 제167조의4)

가. 개정취지

- 양도소득세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종과에서 제외되는 주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 등 ○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○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○ 문화재주택·상속주택·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·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○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○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종과 제외 주택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*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(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)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2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종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, 제167조의4, 제167조의10, 제167조의11)

가. 개정취지

- 양도소득세 종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종과에서 제외되는 주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 등 ○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○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○ 문화재주택·상속주택·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·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○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○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등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종과 제외 주택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(조세특례제한법 §77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토지보상법·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·양도되는 주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)

가. 개정취지

- 양도소득세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○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○ 취학·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 ○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○ 혼인 합가,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○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○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○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(정비구역 제외) ○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과 제외 주택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○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22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

(소득세법 제126조의3~126조의12,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5~제183조의9)

가. 개정취지

-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○ 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식 등 (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) ○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(부동산 주식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금액 : 25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분계산 규정 ○ 국외전출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소득 - 종합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 과세표준 - (추 가)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대상 조문정비 ○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(국외주식 제외) ○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본공제금액 : 연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○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* : [5천만원] - [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] * 상장주식, 중소·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○ 나머지 주식 : 연 25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분계산 소득 추가 ○ (좌 동) -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

※ (조문이동) 소득법 § 118의9 ~ § 178의18 삭제, § 126의3 ~ § 126의12 신설
 소득령 § 178의8 ~ § 178의12 삭제, § 183의5 ~ § 183의9 신설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

23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, 제167조의8)

가. 개정취지

- 금융투자소득세 시행(2023년) 등 감안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*의 범위 *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을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

○ '20.4.1. ~ '21.3.31. 양도 시			○ '20.4.1. ~ '22.12.31.		
구 분	지분율	종목별 보유액	구 분	지분율	종목별 보유액
코스피	1% 이상	10억원 이상	코스피	1% 이상	10억원 이상
코스닥	2% 이상		코스닥	2% 이상	
코넥스·비상장	4% 이상		코넥스·비상장	4% 이상	
○ '21.4.1. 이후 양도 시			<삭 제>		
구 분	지분율	종목별 보유액			
코스피	1% 이상	3억원 이상			
코스닥	2% 이상				
코넥스·비상장	4% 이상				

2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* 추가

(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신설)

* CFD(contract for difference) :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(매매차익)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

가. 개정취지

-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증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·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<추 가> ② 주식워런트증권(ELW)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CFD 추가 ○ (좌 등) ○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-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,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- 주식등, 주가지수(변동성지수 포함) 집합투자증권, 주가지수(변동성지수 포함) 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□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4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25 차액결제거래(CFD) 양도차익의 계산(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4항 신설)

가. 개정취지

-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CFD 양도차익 계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4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2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(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7항 신설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주식 시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9조제1항에 따른시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세법 시행령 § 89① ① 원착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: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: ②의 가액에 20%가산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% 이상인 경우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* 단,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(국제조세 분야)

✓ 주요 개정 내용

-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
-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방식 폐지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
-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·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

【관계법령】

-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7757호) : 2020.12.29. 공포
-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1442호) : 2021.2.17. 공포
-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기획재정부령 제848호) : 2021.3.16. 공포

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필요경비 산입 허용

(소득세법 제57조, 법인세법 제57조)

가. 개정취지

-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○ 한도*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$* 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종합소득금액}}$ 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: 5년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필요경비 산입 ○ (좌 동) - 5년 → 10년 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

(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,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)

가. 개정취지

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(손금)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소득 필요경비(법인의 경우 손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(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인금액 제외)과 그 부대비용 등 ○ 제세 공과금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(또는 손금)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제세 공과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(또는 손금)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(사업연도)부터 적용

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필요경비 산입 산입 방식 폐지

(소득세법 제57조, 법인세법 제57조)

가. 개정취지

-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 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접외국납부세액(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) 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	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간접외국납부세액(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) 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(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)

<p><input type="checkbox"/> ①세액공제와 ②손금(필요경비)산입 중 선택 가능</p> <p>① (세액공제)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(손금산입)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</p>	<p>※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: 손금(필요경비) 산입 방식 삭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
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

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)

가. 개정취지

-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법인세법」상 손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를 매출액·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</p> <p>① 매출액 방법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조 제11호*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(위탁·공동연구 포함)에 지출된 비용 <p>*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(일반적인 관리·지원 등 제외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</p>

R&D활동	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매출액 방법, ②매출총이익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○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(국외자회사 매출·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)
국내 > 국외	$\text{연구개발비용} \times 50\%$ \times 외국자회사 등 매출 내국법인 총 매출 $+ \text{외국자회사 등 매출}$	
	(연구개발비용 \times 50%) + (※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)	
국내 < 국외	(연구개발비용 \times 50%) + (※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)	

② 매출총이익 방법

R&D활동	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
국내 > 국외	$\text{연구개발비용} \times 75\% \times \text{국외원천}$ 사용료(royalty) [매출총이익+국외원천 사용료(royalty)]
	(연구개발비용 \times 25%) + (※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05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

(소득세법 제119조, 제126조, 제156조, 법인세법 제92조, 제93조, 제98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□(과세대상)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○ 가상자산 사업자*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 하목 -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: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 -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* *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. 다만,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

<p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(소득구분) 기타소득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과세방법) 원천징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천징수 의무자) 소득을 지급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·대여·인출시 : 가상자산 사업자 ○ (원천징수 금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in [양도가액×10%,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등)×20%] ○ (원천징수 시기) 소득을 지급하는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○ (납부방법)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*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 $\text{인별 누적 원천징수액} \times \frac{\text{인별 인출액**}}{\text{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}}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금·가상자산을 1년간 미인출시는 다음연도 1월10일 **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× 수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천징수 대상 확인)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·확인 * 가능 *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: 3년 ※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·면제 적용 가능(비과세·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)
------------------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 분부터 적용

0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·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

(소득세법 제1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3, 법인세법 제9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구분 유지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○ 이자소득 : 「소득세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 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유지

<p>자소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당소득: 「소득세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파생결합사채·파생결합증권의 이익,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<추 가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자소득: 2020년 세법개정으로 배당 → 이자로 분류되는 소득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파생결합사채 이익' 제외 ○ 배당소득: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 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생결합사채 이익 - 집합투자기구의 이익: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(일부 분배금* 비과세 → 과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,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제외 -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식워런트증권(ELW) 이익,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(ETN) 양도 제외
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07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
(소득세법 제164조의2, 법인세법 제120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절차 간소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제출의무자)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·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 <추 가> ○ (제출처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○ (제출기한)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휴·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(좌 동) </div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법인세법(법인세 분야)

✓ 주요 개정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○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○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○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○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○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○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○ 가상자산 규정 정비 ○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○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

【관계법령】

-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7652호) : 2020.12.22. 공포
-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1443호) : 2021.2.17. 공포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

(법인세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의무자 ① (원칙) 수익자 ② (예외) 위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○ (과세방식)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</p> <p>*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□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좌 등) ② 위탁자 과세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등) -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<p>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</p> <p>*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, ②수익자 지정·변경권, ③신탁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</p> <p>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본의 이익 : 위탁자 • 수익의 이익 :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<p>○ (좌 등)</p> <p>□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①~③의 신탁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)에 따른 투자신탁제외)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수탁자*가 선택 *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① 「신탁법」 제3조에 따른 목적신탁 ② 「신탁법」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신탁 ③ 「신탁법」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-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*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-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*하지 않는 경우 *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, ②수익자 지정·변경권, ③신탁해지 시 신탁재산 귀속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○ (과세방식)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*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 시 배당소득세 과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

(법인세법 제73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○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 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·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자신탁·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○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: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·위임 간주 ○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: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·위임 간주 ※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(법인세법 제75조의17) 신설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

(법인세법 제75조의10, 제75조의11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○ (수탁자의 납세의무)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)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○ (수익 분배)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 시 배당으로 간주 ○ (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)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*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예)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 → 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-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미적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

(법인세법 제75조의12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, 제120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설립)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) 신탁이 설정된 날 ○ (해산) 신탁이 종료된 날* 해산한 것으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○ (사업연도)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○ (납세지)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*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*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

(법인세법 제75조의13)

가. 개정취지

-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○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(주수탁자)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○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

(법인세법 제18조의2·3, 제75조의14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○ (내용)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○ (소득공제 적용시기)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○ (소득공제 신청방법 등)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-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○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·분할에 대한 규정

(법인세법 제75조의15)

가. 개정취지

-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합병)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의 신탁재산 →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→ 합병법인 ○ (분할)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전하는 신탁재산 →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→ 분할신설법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을 합병·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

(법인세법 제75조의16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,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

(법인세법 제75조의17, 제75조의18,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5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협력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<input type="checkbox"/> 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) 배제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<input type="checkbox"/> (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)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- (이자소득 등의 범위)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- (금융회사 등의 범위) 은행·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등 ※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)과 범위 동일 <input type="checkbox"/> (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)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임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

(법인세법 제109조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설립 신고 ○ (기한)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○ (기재내용) -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- 본점 소재지 - 사업 목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내용 규정 ○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○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- 수탁자 명칭 등 추가 -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-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

(법인세법 제109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○ (신고사유) 新수탁자가 선임,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, 주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○ (신고기한)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○ (제출서류) 변경 신고서, 변경사실 증명서류 ○ (기재내용) 新수탁자, 승계한 수탁자, 변경 전·후 주수탁자의 명칭, 납세지 등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

(법인세법 제111조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편의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사업자등록 ○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○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(좌 동) ○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

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

(법인세법 제113조)

가. 개정취지

- 구분경리 규정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구분경리 ○ 비영리법인인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 경리 ○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구분경리 대상 추가 (좌 동) ○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

(법인세법 제13조, 제76조의13)

가. 개정취지

-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이월공제 ○ (공제기간) 10년 ○ (공제한도) - 일반기업 : 각 사업연도소득의 60% - 중소기업·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: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%	<input type="checkbox"/>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○ 10년 → 15년 ○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

0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

(법인세법 제19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○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○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○ (좌 동) ○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

0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

(법인세법 제24조)

가. 개정취지

-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* 정의 *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(좌 동) ② 50% 한도 기부금 - 범위 : (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) - 한도액 계산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손금산입 한도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법정기부금</td> <td>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× 50%</td> </tr> <tr> <td>2. 지정기부금</td> <td>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 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손금산입 한도액	1. 법정기부금	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× 50%	2. 지정기부금	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 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(기준소득금액의 60% 한도)] × 50%</td> </tr> </table>	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(기준소득금액의 60% 한도)] × 50%
구분	손금산입 한도액							
1. 법정기부금	(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 × 50%							
2. 지정기부금	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 기부금 손금산입액] × 10%							
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(기준소득금액의 60% 한도)] × 50%								

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- 국가,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- 사회복지·문화·교육·종교 등 기부금	③ 10% 한도 기부금 - 범위 : (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) - 한도액 계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"> [기준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((기준소득금액의 60% 한도) - 50%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) × 10% </div>
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05 합병·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

(법인세법 제45조, 제46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, 제83조)

가. 개정취지

- 합병·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합병법인,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·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합병·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□ 피합병법인,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이월잔여기간*동안 손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○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부금한도초과액 × $\frac{\text{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}}{\text{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}}$ ○ 합병법인·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·적용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및 제80조의4 제8항* 준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/2 이상을 처분하는 등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합병·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0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(법인세법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부동산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규정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(적격분할의 요건) 사업목적에 위한 분할 ○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- 다음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음 *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,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·부동산 등이 80% 이상인 사업부문 ○ 자산·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○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(적격분할의 요건) 사업목적에 위한 분할 ○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(삭 제) (좌 동) ○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*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·부동산 등이 80% 이상인 사업부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0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

(법인세법 제63조)

가. 개정취지

- 초·중·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○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대학법인, 산학협력단 ○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width: 20px; height: 20px; margin: 5px auto;"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
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0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 의무 등 면제

(법인세법 제75조의4, 제11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영수증 정의(법인세법 제75조의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의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전자기부금영수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(법인세법 제112조의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보관)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○ (제출) 국세청장 등이 요청 시 제출할 의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단서 추가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서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면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단서 추가>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의무 면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7.1.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0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

(법인세법 제75조의7)

가. 개정취지

-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○ (대상)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○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5% *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%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율 50% 인하 ○ (좌 등) ○ (가산세) 지급금액 × 0.25% *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고·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

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

(법인세법 제76조의8)

가. 개정취지

-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'완전지배'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○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○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○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

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수익사업 범위 ○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- 아동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<추 가> ○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,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수익사업의 대상추가 ○ (좌 동) - (좌 동) - 건강가정지원센터 ○ (좌 동) ○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* *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

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)

가. 개정취지

-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○ (원칙)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% ○ (예외)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% -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-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대상 법인 추가 -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·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*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* 「한국해양진흥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-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)

가. 개정취지

-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불특정다수인 대상) 광고선전비 ○ (특정인 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3만원(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) 이하 : 광고선전비 * 연간 3만원(개당 1만원) 초과접대비 	<input type="checkbox"/>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준금액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간 5만원(개당 3만원)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

(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)

가. 개정취지

-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증빙*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경조금) 20만원 이하 ○ (그 외) 1만원 이하 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액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3만원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)

가. 개정취지

-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손비의 범위 ○ 매입가액, 양도자산 장부가액, 감가상각비,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손비 범위 확대 ○ (좌 동) ○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)

가. 개정취지

-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○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어음, 수표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손 사유 추가 ○ (좌 동)

<p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① 채무자의 파산·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·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발생으로 중재기관·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회수가 불가능하거나,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·공공기관 등이 확인 <p>※ 「舊외국환거래규정」에서 외국환은행의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</p>
-----------------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

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)

가. 개정취지

-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가상각대상 개발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·0000<0003>공정·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○ (요건)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발비 요건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요건)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산 폐기에 따른 즉시상각 의제 ○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 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의제대상 추가 ○ (좌 동) ○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

19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, 제39조 제5항)

가. 개정취지

-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○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<단서 추가>	○ 공개기한 : 3개월 → 4개월 이내 -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*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

20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·제5항)

가. 개정취지

-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○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<단서 추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단서 규정 신설 ○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*에 해당 시 예외 인정 * 공익법인의 설립·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·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

21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, 제39조 제8항)

가. 개정취지

-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① 상속세 및 증여세(가산세 포함)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취소대상인 의무 :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사용 등 14개 의무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·제3항·제8항~제11항) ② 추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 시 취소대상인 의무 : ①회계감사, ②전용계좌 개설·사용, ③결산서류 등 공시의무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, 제50조의2, 제50조의3) ○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 위반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소사유 보완 ○ (좌 동) ① ②의무*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(가산세 포함) 1천만원 이상 추징 시 취소 대상 *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○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

22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)

가. 개정취지

-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○ (비영리법인 → 국세청) -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추천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 ○ (국세청 → 기획재정부) -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*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 까지 제출 * 추천단체의 법인명, 대표자,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추천신청 및 추천 기한 설정 ○ (좌 동) -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○ (좌 동) -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

23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○ 아동복지시설, 장기요양기관,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○ (좌 동) ○ 건강가정지원센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24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)

가. 개정취지

-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○ 은행, 증권·보험사, 상호저축은행, 농협, 수협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회사 대상 추가 ○ (좌 동) ○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 (신용사업, 공제사업에 한정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5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)

가. 개정취지

-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○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- 단,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○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-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6 가상자산 규정 정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, 제77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○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○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 등 <추 가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대상 자산·부채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○ 가상자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 평가방법 ○ 선입선출법 * 소득세법과 동일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27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(① → ② → ③)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

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- (제외대상)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	① (좌 동)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- (제외대상) 가상자산 추가 ③ (좌 동) *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평가일 전·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
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28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분할 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 부문의 분할로 보는 경우 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등 ②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(좌 동) - 분할합병의 경우*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 *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②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

29 물적분할·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, 제84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적격물적분할·현물출자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요건*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익금산입 * ① 분할법인·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, ② 분할신설법인·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○ (예외) 분할법인·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·피출자법인이 "최초로" 적격 구조조정*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*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, 적격현물출자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예외) (좌 동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다음의 경우 "최초로"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합병·분할·물적분할·현물출자 • 주식 및 관련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 부문의 적격분할·물적분할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합병·분할·물적분할·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30 물적분할·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
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)

가. 개정취지

-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신 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당초 분할법인·출자법인의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</p> <p>○ 계산방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주법인*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× 해당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,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</p> </div> <p>* 해당 적격합병, 적격분할,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,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- 당초 분할법인·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합병·분할·물적분할·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31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, 제89조)

가. 개정취지

-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
 - *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 ① → ② → ③)</p> <p>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: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</p> <p>① 상장주식 시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 거래한 경우 : 거래일 최종시세가액* *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•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* * 장중/시간외 경쟁대량매매·대량매매·바스켓매매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제외대상)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% 이상인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에 따른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% 할증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%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(좌 동) ③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장주식 적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
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32 연결법인간 용역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

(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5)

가. 개정취지

-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행위계산 유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전,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·제공하거나, 고리로 차용·제공받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제공 거래는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*

	<p>*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,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, 그 밖에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</p> <p>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</p>
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

33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)

가. 개정취지

-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 기타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○ 용역제공원가 × (1 +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에서의 수익률)	<input type="checkbox"/>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○ 용역제공원가 × (1 +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의 수익률)

3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대상 축소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)

가. 개정취지

-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대상 ○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작성·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○ 20억 원 → 30억 원 이상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35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

-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○ 농협 등 조합법인, 투자회사 ○ 공공기관·기관투자자 및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등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출 제외대상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○ 정비사업조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36 비대칭 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)

가. 개정취지

-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○ 비대칭리스*의 경우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(운용리스)에 따른 금액 *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,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

37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
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)

가. 개정취지

-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주임대료 이자율* *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○ 연 1.8%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율 조정 ○ 연 1.2%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3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

(법인세법 제55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개인·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적용대상 ○ (대상) 주택,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 ○ (세율) 법인세율(10~25%) + 추가 10%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조정 ○ (대상)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(조합원입주권, 분양권) 추가 ○ (세율) 법인세율(10~25%) + 추가 20%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예외)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2018.12.31. 이전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② 2008.12.31. 이전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주택 ③ 2009.6.30까지 계약 체결한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④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·신탁업자 등이 취득*한 미분양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4.12.31. 등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정 ⑤ 8년 장기 임대주택 <단서 신설> ⑥ 임직원용 사택,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	<p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이 2020.6.17. 이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*에 한정 *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 <p>○ (좌 동)</p>
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세율인상) 2021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 (임대주택 추가세율 적용) 2020.8.7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

(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○ 단기임대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8.3.31까지 등록분 -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○ 단기임대주택 삭제,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20.6.17까지 등록분 -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○ 건설임대주택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기임대주택 삭제, 장기일반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
<p>㉔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: 8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매입임대)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○ (건설임대)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	<p>㉔ 10년으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○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㉑ 2020.7.11.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 (변경 신고)하는 분부터 적용
- ㉒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)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

40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

(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○ 단기임대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18.3.31까지 등록분 - 의무임대기간 5년 등 ○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20.6.17까지 등록분 - 의무임대기간 8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㉑ 임대등록 자동말소시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) :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㉒ 임대등록 자진*말소시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) :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배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무임대기간의 1/2이상 임대한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0.8.18.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)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
41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

(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)

가. 개정취지

-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부여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(10%)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·토지 등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주택, 사택 등 ○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 ○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, 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○ 「도시개발법」등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○ 적격분할,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○ LH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○ 주택 신축·판매 법인의 해당 주택 양도소득 ○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300호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, 발생하는 소득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p>□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·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2022.12.31.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2.17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법인세법(국제조세 분야)



주요 개정 내용

-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
-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
-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-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
- 외국법인·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설
-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·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

【관계법령】

-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(법률 제17652호) : 2020.12.22. 공포
-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대통령령 제31443호) : 2021.2.17. 공포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(기획재정부령 제844호) : 2021.3.16. 공포

01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

(법인세법 제57조, 소득세법 제57조)

가. 개정취지

-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○ 한도*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$* \text{산출세액} \times 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과세표준}}$ 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: 5년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 손금산입 ○ (좌 동) - 5년 → 10년 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법인세·소득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02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인정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,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)

가. 개정취지

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(손금)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소득 필요경비(법인의 경우 손금) ○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(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)과 그 부대비용 등 ○ 제세 공과금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(또는 손금) 인정 ○ (좌 등) ○ 제세 공과금 -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(또는 손금)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(사업연도)부터 적용

03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

(법인세법 제57조, 소득세법 제57조)

가. 개정취지

-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 산입 ○ 간접외국납부세액(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)	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○ 간접외국납부세액(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)
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<p><input type="checkbox"/> ①세액공제와 ②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(세액공제)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(손금산입)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(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) ※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(손금산입 방식 삭제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삭 제></p>
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0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
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,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)

가. 개정취지

-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법인세법」상 손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비를 매출액·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조 제11호*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(위탁·공동연구 포함)에 지출된 비용 *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(일반적인 관리·지원 등 제외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방식 보완</p>

① 매출액 방법

R&D활동	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
국내 > 국외	$\frac{\text{연구개발비용} \times 50\% \times \text{외국자회사 등 매출}}{\text{내국법인 총 매출} + \text{외국자회사 등 매출}}$
국내 < 국외	(연구개발비용 × 50%) + (※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)

② 매출총이익 방법

R&D활동	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
국내 > 국외	$\frac{\text{연구개발비용} \times 75\% \times \text{국외원천 사용료(royalty)}}{[\text{매출총이익} + \text{국외원천 사용료(royalty)}]}$
국내 < 국외	(연구개발비용 × 25%) + (※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)

- ①매출액 방법, ②매출총이익 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
-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(국외자회사 매출·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0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(법인세법 제57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특례내용)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*(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) * 국외소득×국내원천징수세율(14%) 한도 ○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 등 -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등) ○ 적용대상 추가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등) - 법인과세 신탁재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

06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

(법인세법 제75조의7)

가. 개정취지

-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○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과대상 확대 ○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(내국법인 + 외국법인*) *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

07 외국법인·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

(법인세법 제92조, 제93조, 제98조, 소득세법 제119조, 제126조, 제156조)

가. 개정취지

-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(과세대상)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·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○ 가상자산 사업자*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 하목 - 가상자산 인출시 원천징수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 : 인출시 가상자산 시가 -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 등*

<p>* 시가와 필요경비 등은 거주자의 계산방법을 준용. 다만, 사업자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시 입고시의 시가로 취득가액 의제</p> <p>□ (소득구분) 기타소득</p> <p>□ (과세방법) 원천징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천징수 의무자) 소득을 지급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·대여·인출시 : 가상자산 사업자 ○ (원천징수 금액) <p>Min [양도가액×10%,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등)×20%]</p> ○ (원천징수 시기) 소득을 지급하는 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·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○ (납부방법) 가상자산 또는 현금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*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세무서 등에 납부 $\text{인별 누적 원천징수액} \times \frac{\text{인별 인출액**}}{\text{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}}$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금·가상자산을 1년간 미인출시는 다음연도 1월10일 **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 × 수량 ○ (원천징수 대상 확인)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·확인 * 가능 *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가3년 ※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·면제 적용 가능(비과세·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2.1.1.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

08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외국법인·비거주자 소득구분 명확화

(법인세법 제9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, 소득세법 제1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8)

가. 개정취지

-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구분 유지 및 집합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○ 이자소득 : 「소득세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○ 배당소득 : 「소득세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※ 파생결합사채·파생결합증권의 이익,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현행 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유지 ○ 이자소득 : 2020년 세법개정으로 배당 → 이자로 분류되는 소득 제외 - '파생결합사채 이익' 제외 ○ 배당소득 :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 유지 - 파생결합사채 이익 -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: 금융투자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(일부 분배금* 비과세→ 과세) *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•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(ETF),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제외 -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• 주식워런트증권(ELW) 이익,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(ETN) 양도 제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09 외국법인·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

(법인세법 제120조의2, 소득세법 제164조의2)

가. 개정취지

- 납세절차 간소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○ (제출의무자)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·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○ (좌 등)

<p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제출처)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○ (제출기한)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** 휴·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	<p>-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</p> <p>(좌 동)</p>
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21.1.1.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